

畜産業協同組合法施行令

축산업협동조합 중앙회

제1 조(목적) 이 영은 축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조(축산업과 양축가의 범위)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과 양축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업의 범위 : 낙농업·양돈업·양계업·양봉업·양토업·양록업과 소·말·양·염소·가금 등 가축의 생산업과 이에 부수하는 사업
2. 양축가의 범위 :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가구주 개인

제3 조(지역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별축산업협동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창립총회의사록 사본·사업계획서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수산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 조(지역조합의 조합원자격)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이상의 성가축 또는 성가금을 1종 이상 사육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한다.

1. 소 2두, 다만, 착유우는 1두
2. 돼지(육성돈을 포함한다) 10두
3. 양 20두
4. 사슴 5두
5. 밍크 100두
6. 토끼 100수

7. 육계(육성계를 포함한다) 1천수
8. 산란계 500수
9. 오리 200수
10. 양봉 10군

제5 조(출자증권의 발급)

제6 조(출자증권의 기재사항) 출자증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후 당해조합장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발행연월일
3. 출자자의 주소 및 성명
4. 출자 1좌의 금액
5. 출자내용 및 금액
6. 출자좌수
7. 출자금납입금액
8.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을 표시하는 문구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7 조(조합임원의 선출) ①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선거에 있어서는 조합장(창립총회의 경우에는 임시의장)은 조합원중에서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를 지명하고, 선거를 완료한 때에는 선거록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자·투표관리자·개표관리자로 하여금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1항의 임원선거는 선거일 7일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당선자가 결정될 때에는 조합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 조(임원의 보궐선거와 그 임기)

제9 조(조합원 명부 등)

제10 조(간부직원) ① 법 제51조 제1항·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간부직원으로 전

무 1인과 3인 이내의 상무를 둘 수 있다.
다만, 지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지사무소 마다 상무 1인을 둘 수 있다.

② 간부직원의 자격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전형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직원경력에 있는 자로 한다.

③ 제 2항의 중앙회의 직원경력기준은 농수산 부령으로 정한다.

제 11 조 (신용사업의 한도 및 방법) ① 조합의 조합원 1인에 대한 대출은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조합원 1인에 대한 신용대출한도는 제 1항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③ 조합의 예금·적금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의 최고한도는 주무부장관이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조합은 전월말 현재의 예금 및 적금잔고의 100분의 10이상을 상환준비금으로 중앙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다른 기업에의 출자) ① 법 제 55조(법 제 103조 및 법 제 1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 제 1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는 중앙회를 말한다)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액은 자기자본액에서 고정자산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 55조 제 2항(법 제 103조 및 법 제 1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법 제 13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는 중앙회를 말한다)이 출자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결의를 거친 후 그 신청서에 출자의 목적, 출자대상기업의 실태, 자체사업과의 관련성, 출자조건과 범위, 자기자본 및 고정자산의 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합의 경우에는 중앙회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여유자금의 예치) 법 제 59조(법 제 10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의하여 그 여유자금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다.

제 14 조 (관할등기소)

제 15 조 (준용규정)

제 16 조 (축산계의 설립 및 승인) ① 축산계(이하 "계"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내에 거주하는 지역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회를 개최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역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설립준비회의 의사는 출석한 양측가의 과반수(발기인 과반수가 포함되어야 한다)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창립총회 개의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외에 계의 설립절차 및 승인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제 17 조 (정관의 기재사항) 계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구 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및 제명
6. 계원의 권리와 의무
7. 총회 기타 의결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의 종류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경비부과·수수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10. 적립금 및 그 적립방법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연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3. 해산·합병 및 분할에 관한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18 조 (총회) ① 계에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하며 계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계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 19조 (총회의 결사항) ① 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해산·합병 및 분할
4. 임원의 선출
5. 사업계획·수지예산의 책정 및 결산의 승인
6. 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7. 기타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 1항 제 1호의 사항은 지역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 20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제 21조 (임원의 점수 및 선임 등) ① 계에는 임원으로 계장·간사 및 감사 각 1인을 둔다.

② 계장 및 감사는 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며, 간사는 계원중에서 계장이 임명한다.

③ 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의 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④ 계의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계장과 감사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장이, 간사의 경우에는 계장이 해임할 수 있다.

1. 사업목적외에 계의 자금을 사용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계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한 때
2. 법 기타 계에 적용되는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계에 손실을 끼친 때
3. 지역조합장의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 22조 (임원의 임기)

제 23조 (임원의 직무)

제 24조 (사업) ① 법 제 96조 제 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축산자금의 알선 및 추천
3. 양 축가를 위한 후생복지사업
4. 계원의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계약의 체결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하는 사업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에 의한 사업

6. 기타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와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에서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 25조 (합병) ① 계가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각 계의 총회에서 합병의 의결을 한 후 계장이 공동으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합병에 의하여 새로운 계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각 총회에서 선출된 설립위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계의 설립에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③ 설립위원의 수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합병하고자 하는 각 계의 계원중에서 동수로 선임한다.

제 26조 (분할) 계가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분할 후 설립될 계가 승계하여야 할 권리·의무의 범위를 정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지역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7조 (준용규정)

제 28조 (해산사유) ① 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규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합병 또는 분할
4. 계원수가 10인 미만일 때
5. 지역조합장의 해산명령

② 제 1항 제 1호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고, 제 1항 제 2호의 경우에는 지역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조 (합병·분할 또는 해산명령)

제 30조 (지도 및 감독)

제 31조 (업종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 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창립 총회의 사록사본·사업계획서 기타 농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2 조 (업종조합의 조합원자격) 법 제 101조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 이상의 가축 또는 기
금을 사육하는 가구주 개인을 말한다.

1. 낙농업종은 착유우 5두
2. 양돈업종은 돼지(포유자돈 제외) 100두
3. 양계업종은 산란계 5천수 또는 육계 1만
수
4. 양봉업종은 양봉 20군
5. 양토업종은 토끼 200수
6. 양록업종은 사슴 10두

제 33 조 (중앙회의 설립인가) 법 제 10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중앙회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창립총회의사록
사본·사업계획서 기타 농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중앙회의 출자증권 및 등기) 중앙회의 출
자증권 및 등기에 관하여는 제 5 조·제 6 조·
제 14 조 및 제 15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
우 “조합장”은 “중앙회장”으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성명”은
“명칭”으로 본다.

제 35 조 (중앙회의 대의원 정수 및 선출) ① 중앙
회의 대의원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
한다.

1. 회원인 지역조합이 각도(서울특별시·직할
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별로 호선하는
1인. 다만, 조합수가 10개를 초과하는 도
에 있어서는 초과하는 조합 5개마다 1인씩
추가한다.
2. 회원인 업종조합이 호선하는 3인
- ② 대의원은 제 1 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무기
명비밀투표로 선출한다.
- ③ 제 7 조의 규정은 중앙회의 대의원 선출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장”은
“중앙회장”으로,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
원”은 “회원”으로, “임원”은 “대의원”으로본
다.

제 36 조 (대리인의 등기) ① 법 제 121조의 규정
에 의하여 중앙회장이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지사무소와 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
기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
도 또한 같다.

1.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2. 대리인을 둔 중앙회 또는 지사무소의 명칭
과 주소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제
한내용
- ② 중앙회의 대리인 선임에 관한 등기에 있어
서는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당해
대리인의 제 1 항 제 3 호에 해당될 때에는 이
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 37 조 (채권의 발행방법)

제 38 조 (채권의 형식)

제 39 조 (채권의 모집)

제 40 조 (계약에 의한 채권인수)

제 41 조 (채권의 발행총액)

제 42 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 43 조 (채권의 공매)

제 44 조 (공매채권의 총액)

제 45 조 (채권의 기재사항)

제 46 조 (납입신고 및 등기)

제 47 조 (채권원부 비치 및 열람)

제 48 조 (통지와 최고)

제 49 조 (명의변경)

제 50 조 (질권설정)

제 51 조 (홀결된 이권)

부 칙

① (시행일)

②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조합의 조합
원으로서 이 영에 의한 조합원 자격기준에 미
달하는 자는 1982년 12월 31일까지 당해조합
의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③ (조합간부직원의 임면 특례시한) 법 부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간부직원을
중앙회장이 임면하는 시한은 1987년 3월 31일
까지로 한다.